

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기준 및 절차

◆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대응요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지원

□ 지원 대상 기관

- (시·도)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감염취약시설(요양·정신병원, 요양·정신시설,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) 대상
- (의료기관)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상급종합병원·국립대병원·거점전담병원) 대상
- (센터·시설) 생활치료센터, 임시생활(검사)시설
- (권역센터 및 검역소)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공·항만 검역소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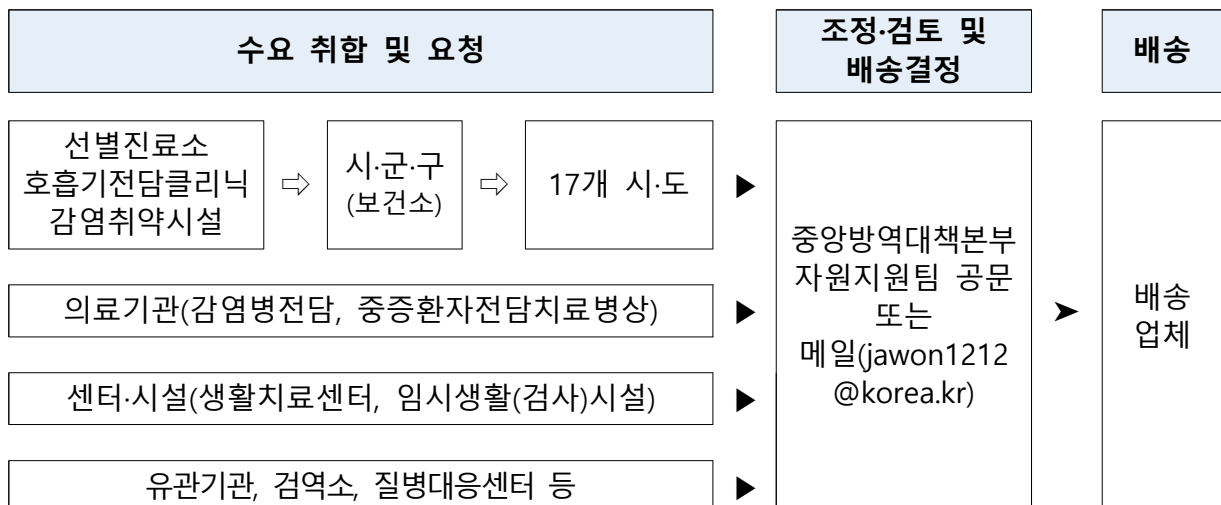
□ 지원기준

- 산출기준을 바탕으로 대상기관별 현 재고량과 수요량 등 종합적 검토 후 배분량 결정

□ 기관별 신청절차

- 기관별 담당자가 **월 1회** 방대본 자원지원팀으로 서식 작성하여 공문 또는 메일(jawon1212@korea.kr) 발송 * (예시)6월분 물량 : 5.25.~6.5. 신청

< 주요 절차 및 방법 >



□ 산출기준

- ① 선별진료소: 1회 평균 투입인력 × 4회(일) × 기간(30일)
- ② 호흡기전담클리닉: { ㉠ (경증환자 수 × 5인) + ㉡ (중등증·중증환자 수 × 15) + ㉢ (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등 인력 × 4회) } × 기간(30일)
- ③ 감염취약시설(선제적검사 기관*): 1회 평균 투입인력 × 2회(일) × 4(주1회)
*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주 1회 선제적 검사 시행
- ④ 환자이송: 일 평균 건수 × 건당 2개 × 기간(30일)
- ⑤ 전원받은 요양기관*: 환자 수 × 5인(경증기준) × 기간(14일)
* 전원시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원 후 2주간 지원

※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될 경우 협의 후 조정 가능

□ 신청절차

- (방법) 시·도에서 관할 내 보건소,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감염취약시설* 등의 방역물품 수요를 조사하여 방대본(자원지원팀)으로 공문 신청
* 요양정신 병원, 요양정신 시설,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
- (신청주기) 1개월(30일) 기준 분량을 매월 5일까지 신청
* 긴급상황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
- (신청품목) N95 마스크, 긴팔가운, 헤어캡, 고글, 페이스섶드, 장갑, 비닐가운

□ 배분방식

- 배분(결정)량을 신청기관의 배송 희망일과 배송수단(화물, 택배)을 포함하여 배송업체 전달 및 신청기관에 회신
* 보관 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분할배송 요청하는 경우 1·2차 배송일 지정 가능

□ **산출기준**

- ① 선별진료소: 1회 평균 투입인력 × 4회(일) × 기간(30일)
- ② 의료기관: { ㉠(경증환자 수 × 5인) + ㉡(중등증환자 수 × 10인) + ㉢(중증환자 수 × 15인) + ㉣(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등 인력 × 4회) } × 기간(30일)
- ③ 환자이송: 일 평균 건수 × 건당 2개 × 기간(30일)

※ PAPR의 경우 중증환자(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)에 한하여 1명당 3세트

- * 부속품: ▲후드(세트의 20배수), ▲필터(세트의 10배수), ▲튜브(세트의 4배수), ▲튜브커버**(세트의 20배수), ▲배터리(세트의 2배수) (4주 기준)

** 튜브커버는 튜브 재사용 용도로 신청

※ 추가적인 수요가 예상될 경우 사전협의 후 조정 가능

※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(정당한 사유 및 증빙 필요)

□ **신청절차**

- (방법)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전담병원·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(상급 종합·국립대병원·거점전담병원)은 기관의 방역물품 수요를 조사하여 방대본(자원지원팀) 메일(jawon1212@korea.kr)로 직접 신청

* 신청 서식: jawon1212@korea.kr로 요청

- (신청주기) 의료기관별 30일 기준 분량 신청

* 긴급상황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

- (신청품목) N95 마스크, 긴팔가운, 헤어캡, 고글, 페이스설프드, 장갑, 비닐가운, PAPR*(세트·후드·필터·튜브·튜브커버·배터리)

* PAPR은 중증환자(에어로졸 발생 처치시)에 한하여 최초에는 세트로 지급하고, 이후에는 부속품으로 지급

** 신청품목은 위 물품에 한함

□ **배분방식**

- 배분(결정)량을 매월초(6일~12일 사이) 배송수단(화물, 택배)을 포함하여 배송업체 전달 및 신청기관에 회신

* 보관 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로 분할배송 요청하는 경우 1·2차 배송일 지정 가능

□ 산출기준

{ ㉠ (1회 배식투입인력 × 3회) + ㉡ (1회 방역투입인력 × 횟수) + ㉢ (1회 의료투입인력 × 횟수) + ㉣ (기타 투입인력 × 횟수) } × 기간(30일)

* 자가격리키트(또는 체온계): 최근 2주간 일평균 장기입소자 수

□ 신청절차

- (방법) 시설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하여 방대본(자원지원팀)에 메일(jawon1212@korea.kr)로 신청
- (신청주기) 30일 기준 분량을 신청
 - * 긴급상황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: 예측 불가능한 입소자의 폭증 시 최근 2주간 입퇴소자 증빙 첨부 필수
- (신청품목) 개인보호구(N95 마스크, 긴팔가운, 헤어캡, 고글, 페이스설프드, 장갑), 자가격리키트(체온계, 손소독제, 마스크)
 - * 개소 시 1회성 지원 품목 : 비접촉식체온계2, 혈압계1, 산소포화도측정기2 (혈압계 및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입소정원 50명 이상 시 2배)
 - ** 신청품목은 위 물품에 한함

□ 배분방식

- 배분(결정)량을 매월초(6일~12일 사이) 배송수단(화물, 택배)을 포함하여 배송업체 전달 및 신청기관에 회신

□ 산출기준

- 기관별 예산 활용하여 자체 조달이 원칙이나, 재고소진 및 긴급 대응용 등 기관별 상황을 종합적 검토 후 배분량에 대해 담당자 협의 후 결정

{ ㉠ (1회 검역조사투입인력 × 횟수) + ㉡ (1회 역학조사투입인력 × 횟수) + ㉢ (1회 OO투입인력 × 횟수) + ㉣ (1회 기타투입인력 × 횟수) } × 기간(30일)

* 기관별 특성에 맞게 산출근거 제출

※ (신청품목) 개인보호구(N95 마스크, 긴팔가운, 헤어캡, 고글, 페이스섀드, 장갑)

□ 신청절차

- (방법) 검역소, 질병대응센터 등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하여 방대본(자원지원팀)에 메일* (jawon1212@korea.kr)로 신청
- (신청주기) 해당 기관에서 필요 시 30일 기준 분량을 신청
 - * 긴급상황(예측 불가한 상황)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
- (신청품목) 개인보호구(N95 마스크, 긴팔가운, 헤어캡, 고글, 페이스섀드, 장갑)
 - * 신청품목은 위 물품에 한함

□ 배분방식

- 배분(결정)량을 매월초(6일~12일 사이) 배송수단(화물, 택배)을 포함하여 배송업체 전달 및 신청기관에 회신

참고1

방역물품 배분절차

① 요청

선별진료소, 의료기관,
생활치료센터, 임시시설, 유관기관 등에서
방역물자 요청



② 접수

< 방대본(자원지원팀) 접수 >

시·도 취합 (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감염취약시설 등)	의료기관, 생활치료센터, 임시시설
공문 접수	메일 접수 (jawon1212@korea.kr)



③ 검토

< 배분 검토 >

시·도, 의료기관	생활치료센터	임시생활시설, 기타검역소 등
(043-719-9163)	(043-719-9165)	(043-719-9162)



④ 확정

<배분 확정>
확정량(=검토량) 신청기관에 회신



⑤ 배송 요청

물자 배송 요청 및 통계반영
· (업체) 메일 발송
· (통계) 엑셀파일, 일보

⑥ 배송



⑦ 물품 인수

<수요기관 물품 인수>
물품 인계인수후 인수증 작성
(수요기관->업체제출)

참고2-1

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※ 3.8.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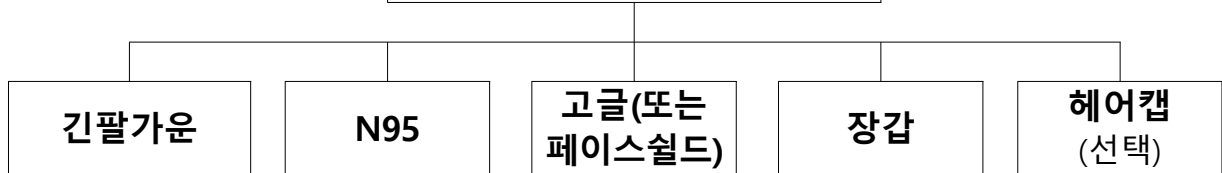
구분	상황, 행위	개인보호구▶					
		호흡기 보호			전신 보호	눈 보호	손 보호
		수술용 마스크▶	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	전동식 호흡기 보호구	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	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	일회용 장갑
검역	검역(검역조사)		●				●
	검역(역학조사)		●		●	●	●
선별 진료소	선별진료소 접수, 안내		●		●		●
	선별진료소 진료, 간호		●		●	●	●
이송	이송(구급차 운전자) ¹⁾		●				●
	확진/의심 환자 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		●		●	●	●
	의심환자 동승 보호자	●					
진료	확진/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		●		●	●	●
	에어로졸 생성 처치 ²⁾			●	●	●	●
	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		●		●	●	●
	호흡기 검체 채취		●		●	●	●
검체 관리	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 ³⁾⁴⁾		●		●	●	●
	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	●					●
장례	시신 접촉		●		●	●	●
	시신백 이송, 관 운구	●					●
청소·소독	청소·소독 ⁵⁾		●		●	●	●
폐기물	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		●		●	●	●
	의료폐기물 운반	●			●		●

※ 「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」 2판(3.8.시행), 「코로나19 대응 지침」 12판(3.12.시행) 참조

참고2-2

개인보호구 참고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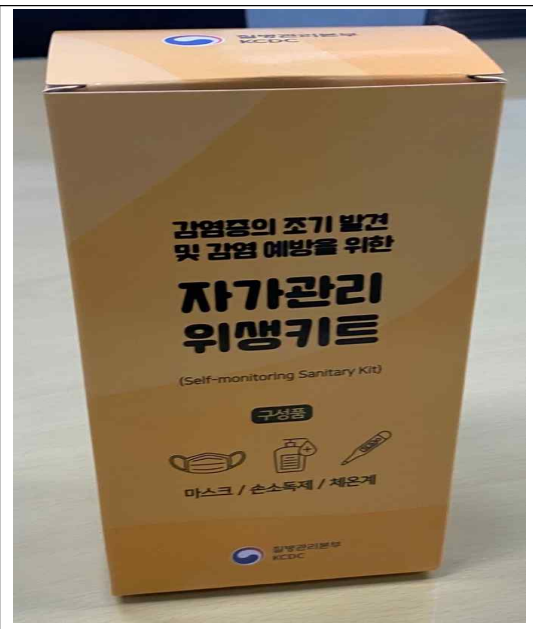
※ 일반적 세트의 예시로 상황, 역할, 사용자에 따라 구성은 변경 가능



		
본체	후드	
		
튜브 (필요시 튜브커버)	필터	배터리

참고2-3

개인보호구 참고자료(자가격리키트)



< 자가격리키트 >



마스크(10매)



손소독제



체온계